문서번호	인사처-256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4.05.08.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11호

★주임	팀장	인사처장	경영지원본부장	이사장
협 조	위원장			

직원 학위취득 지원 개선계획

2014.

인사처

직원 학위취득 지원 개선계획

○ 직원 학위취득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한된 예산범위내 공평한 교육기회 최대 제공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용

Ⅰ 그간의 지원 경위

□ 2003~2008년 대학·대학원, 1학기 50만원 이내 지원

□ 2009~2011년 전문학사 포함, 1학기 50만원 이내 지원

□ 2012~현재까지 전문학사 포함, 1학기 100만원 이내 지원

Ⅱ 현 운영 제도

□ 지원대상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대상자
단, 학위별 지원횟수 이후 2년미만 정년도래자 제외

□ 1인 학기당 지원비 : 최대 10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 액	50만원	등록금의 50%(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전문학사 4회, 학사 8회, 석·박사 5회

□ 지원범위 : 입학학교 학과 졸업까지와 졸업 후 상위학교 진학시

□ 사후관리

- 전문학사·학사 : 학위증 제출
- 석·박사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제출
- 지원횟수 완료 후 2년 이내 학위증 및 수료증 미제출시 지원비 환수

Ⅲ 최근3년간 학위취득 지원내역

□ 연평균 지원내역 : 154명 / 80,666천원

구 분	연간 지원 인원 (상·하반기, 2회)					연간지원금액 (천원)
	계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계	461명	17	360	70	14	241,999
2013년	182명	9	147	22	4	96,125
2012년	165명	3	133	26	3	91,359
2011년	114명	5	80	22	7	54,515

○ **특히, 2012년 지원금액 확대 이후 "500천원 이상 지원" 대상자 증가**

- 2011년) 94명 ⇨ 2012년) 127명↠ 증33명, 증35%

□ 2013년 세부 지원내역

○ **학위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인 원	182명	9	147	22	4
금 액	96,125	5,748 (6%)	68,169 (71%)	19,158 (20%)	3,050 (3%)

○ **학위취득기관별** (단위:천원)

구 분	계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일반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인정제)
인 원	182명	101	39명	31명	11
금 액	96,125	49,982 (52%)	13,526 (14%)	27,917 (29%)	4,700 (5%)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제한된 예산범위내 대상인원 지속 증가 ⇨ 예산부족 발생**

※ '13년: 예산 60,000천원/ 집행 96,125천원 (집행률160%)

○ **지원신청자에 대한 지원조건,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미흡**

- 학위증·수료증 미제출, 학사과정 중복하여 수강, 학위과정 미종료후 상위 과정 진행 등

□ 개선방안

○ **지원조건·지원범위 명확화, 지원중단 및 환수기준 등 사후관리 강화**

○ **『직원 학위취득지원 관리내규』 제정하여 효율적 예산운영 도모**

Ⅴ 세부 개선 내용

1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현 행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대상자 단, 학위별 지원횟수 이후 2년 미만 정년도래자 제외
개 선	①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 또는 입학직원 단, 학위별 지원횟수 이후 2년이내 정년 도래자 제외 ② 지원일 기준 2년간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징계처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도박,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반윤리적 원인으로 함 ③ 지원일 기준 공단 근무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

2 지원횟수

현 행	전문학사 4회, 학사 8회, 석·박사 5회
개 선	**1인 정규학기 최대 8회까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 포함)

※ 단, 기존 학비 지원을 받은 자가 2014. 4월말 기준 학위과정이 진행중인 경우 기존 지원횟수를 포함하여 최대 8회를 초과하여도 해당학위 수료시까지 지원한다.

3 지원범위 : 명확화 및 구체화

현 행	입학학교 학과 졸업까지와 졸업 후 상위학교 진학시
개 선	① 학위취득 지원 학자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정규학기 등록금으로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포함하며, 학생회비, 원우회비, 논문작성비, 학술활동비 등은 제외 ② 장학금 수혜 등의 경우 실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③ 졸업학점 미달로 일부과목 재이수 하는 경우 지원 제외

4 학자금 지원중단 (신설)

가. 국가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나. 학위취득 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24조의3에 의한 징계기록말소 시 까지

- 단, 징계처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도박,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반윤리적 원인으로 함

다.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목 또는 '다'목의 경우 노사 동수의 교육위원회 과반수 의결 필요

5 사후관리 강화 : 지원비 환수 기준

현 행	지원횟수 완료 후 2년 이내 학위증 및 수료증 미제출시 지원비 환수 - 전문학사 · 학사 : 학위증 제출 - 석 · 박사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제출
개 선	학자금 지원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자금을 즉시 환수 ① 지원받은 각 학위별 과정 수료 후 2년 이내 학위취득을 못하였을 경우 ② 사망,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외 학위과정 중도포기자 ③ 학위취득 지원기간 중 의원면직한 경우 ※ 학위취득자는 학위취득 후 "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제출 (별첨)

※ **지원금액은 현행과 동일함**(단, 지원자 학비 선납부 후 공단에 신청)

○ 1인 1학기당 지원비 : 최대 100만원

Ⅵ 행 정 사 항

□ 학위취득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이행

- 학위취득 지원 신청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 교육위원회 사전심의 신청
  - 휴직, 정직 및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학자금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학자금 지속 지원을 신청할 경우
- 학위취득 후 '교육이수 결과보고서'15일 이내 제출

□ 2014년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14.3.19, 16:00)

- 직원 학자금 지원 개선방안 도출

□ 직원 학위취득지원 관리내규 제정

- 제정(안) 부패영향평가(감사실, '14.3.27) ⇨ 심의(기획조정실, 4.16) ⇨ 이사장 방침 ⇨ 공포(기획실)
- 시행 : 2014. 1. 1 부터

별첨 : 직원 학위취득 지원 관리내규(안)

직원 학위취득 지원 관리내규(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학위취득 지원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과정에 재학중 이거나 입학통지서 소지자. 단, 학위별 지원횟수 이후 2년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지원접수일 기준 직전 2년간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징계처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도박,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반윤리적 원인에 한한다.
3. 지원접수일 기준 공단 근무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

제3조(지원 금액) ① 학위취득 지원 학자금은 1인 1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 학자금 5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2. 학자금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50만원을 지원한다.
3. 학자금 100만원 이상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자금은 본인이 우선 납부한 후 교육주관부서에 교육비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4조(지원 횟수)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에 한하여 1인 정규학기 최대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① 학위취득 지원 학자금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정규학기 등록금으로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포함한다. 단, 학생회비, 원우회비, 논문작성비, 학술활동비 등은 지원학자금에서 제외한다.

② 장학금 수혜 등의 경우에는 실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졸업학점 미달로 일부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학자금 지원 중단) 학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발생 이후 학기부터 중단한다. 단, 제1호 또는 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학위취득 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24조의3에 의한 징계기록말소 시 까지

   단, 징계처분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도박,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반윤리적 원인에 한한다..
3.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학위취득 학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원한 학자금을 즉시 환수한다.

1. 지원받은 각 학위별 과정 수료 후 2년 이내 학위취득을 못하였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외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하였을 경우
3. 학위취득 지원기간 중 의원면직한 경우

② 학위취득자는 학위취득 후 별지 제1호 '교육이수 결과 보고서'를 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 1. 1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학 위 취 득 과 정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보 고 자	소 속	
	직 급	
	성 명	
학 교 및 학 과	학 교 명	대학(교) 대학원
	학 과 명	
취득학위	학 위 명	
	학 위 번 호	
	학 위 일 자	
	논 문 제 목	
교육기간	입 학 일 자	
	졸업(수료)일자	

첨부 : 졸업증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본인은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교육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 ○ ○ (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